

- 2. 국가보훈대상자로 등록된 저소득 보훈자와 장애인복지법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저소득 장애인
- 3. 기타 보호가 필요한 자로서 규칙으로 정하는 자

제3조(보호내용) ①보호대상자에 대한 보호내용은 다음 각호와 같다. 다만,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동일한 보호가 지원되는 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1. 보상품 지원
- 2. 연탄운반비 지원
- 3. 기타 규칙으로 정하는 사항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호수준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4조(보호대상자의 결정) ①제3조제1항제1호의 지원을 받는 보호대상자는 생활보호법 규정에 따라 선정된 자와 국가보훈대상자로 등록된 저소득 보훈자, 장애인복지법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저소득 장애인으로 한다.

②제3조제1항제2호의 보호를 받는 보호대상자는 생활보호법 규정에 따라 선정된 자증 연탄사용 가구로 한다.

③기타 보호대상자 결정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영등포구청소년출입제한구역지정및운영에관한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998. 3. 10.
사회건설위원회

1. 심사경과

-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1999년 2월 11일 영등포구청장 제출
- 나. 회 부 일 자 : 1999년 2월 13일 회부
- 다. 상 정 일 자 : 1999년 3월 9일 제62회(임시회)제6차 사회건설위원회 상정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생활복지국장 공우홍)

- 가. 제정이유
 - 청소년을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청소년보호법 제5조 규정에서 자치단체의 청소년보호 책무를 규정함과 아울러 동법 제25조에서 청소년출입제한구역의 지정·제한시간·지도단속 등에 관한 사항을 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여 운영토록 위임하고 있어 동조례를 제정, 청소년 보호사무를 적극 추진하려는 것임.

나. 주요골자

- 청소년출입제한구역의 지정범위(안 제2조)
- 출입제한구역 지정 및 시간 : 영등포구 영등포동 4가 435번지 외 2개지역, 제한시간 규정(안 제3조, 제4조)
- 청소년출입제한구역내의 청소년유해환경업소에 대한 선도·지도·단속근거 규정(안 제6조)

3.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 유제한)

본 안은 열악한 환경 즉, 청소년들에게 유해한 환경에서 청소년들이 정신적으로나 신체적으로 건강하게 자라나게 하기 위하여 청소년보호법 제5조와 제25조에 근거하여 청소년들이 출입을 할 수 없는 곳을 지정하고 제한하여 그들을 보호하기 위하여 법 근거를 바탕으로 자치구 조례로 정하고자 하는 제정안으로서 영등포 관내에 청소년들에게 유해한 3개소를 제한구역으로 지정하고 청소년들이 출입을 할 수 없도록 시간제한규정과 위반자에 대한 지도, 계도, 단속을 통한 건전한 사회와 청소년들이 열악한 환경에서 벗어나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보호하기 위한 규정으로 다만, 시간의 제한을 하오 8시에서부터 다음날 오전 5시까지로 규정하는 것은 자칫 그 이외의 시간은 출입을 허용하는 것이나 역설도 있을 수 있으므로 출입의 단속은 24시간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나 생활근거지가 인접하였거나 그곳을 통하지 않고는 자기 집에 갈 수 없을 경우를 생각하여 시간의 제한 규정은 심사숙고하여 결정하여야 한다고 사료됨.

4. 심사결과 : 원안 의결

서울특별시영등포구청소년출입제한구역지정및운영에관한조례(안)

의안 번호	39
----------	----

제출년월일 : 1999. 2. 11.
제 출 자 : 영등포구청장

1. 제정사유

- 청소년을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청소년보호법 제5조 규정에서 자치단체의 청소년보호 책무를 규정함과 아울러 동법 제25조에서 청소년출입제한구역의 지정·제한시간·지도단속 등에 관한 사항을 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여 운영토록 위임하고 있어 동 조례를 제정, 청소년 보호사무를 적극 추진하려는 것임.

2. 주요골자

- 청소년출입제한구역의 지정범위(안 제2조)
- 출입제한구역 지정 및 시간 : 영등포구 영등포동 4가 435번지 외 2개지역(별표1), 제한시간(하오 8시부터 다음날 상오 05시까지) 규정(안 제3조, 제4조)
- 청소년출입제한구역내의 청소년유해환경업소에 대한 선도·지도·단속근거 규정(안 제6조)

3. 참고사항

- 관련법규 : 청소년보호법 제5조 및 제25조
- 합의 및 입법예고 : 유관기관 및 부서의 사전의견 제출 및 입법예고('98. 12. 5~'98. 12. 24)실시결과 제출된 의견 없음
- 예산조치 : 청소년출입제한구역의 관리 및 지도단속에 필요한 예산은 연도별 사업계획에 의거 편성 운영

따로붙임 : 서울특별시영등포구청소년출입제한구역지정및운영에관한조례(안)

서울특별시영등포구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영등포구청소년출입제한구역지정및운영에관한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 및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영등포구청소년출입제한구역지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청소년출입제한구역 지정범위) ①청소년출입제한구역은 구청장이 정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출입제한구역 지정대상은 청소년의 정신적, 신체적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구역을 말한다.

1. 법 제2조 제5목에서 규정한 청소년유해업소가 밀집된 구역
2. 청소년유해매체물, 약물 등의 판매·대여, 제공행위가 빈번히 행해지거나 행해질 우려가 있는 구역
3. 유흥행위가 행해지거나 행해질 우려가 있는 구역
4. 관할지역 주민 1,000명 이상이 연명으로 청소년출입제한구역을 지정하여 줄 것을 요구하는 지역
5. 기타 구청장이 청소년의 출입이 청소년에 유해하다고 인정하여 청소년출입제한구역으로 설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지역

제3조(청소년출입제한구역의 지정) 제2조 규정에 의한 영등포구 관내 청소년출입제한구역으로 설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지역

제4조(청소년출입제한구역내 출입제한시간) 청소년출입제한구역내 청소년 출입제한시간은 하오 8시부터 다음날 상오 5시까지로 한다.

제5조(청소년출입제한구역의 운영) ①청소년출입제한구역 및 시간 지정에 대한 안내표시문을 제작하여 출입제한구역 진입도로 주변 담장 등 적정 장소에 설치·관리한다.

②사회적 여건변동에 따라 청소년출입제한구역의 운영 등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6조(청소년보호법 위반사항 선도·지도단속 방법 등) ①구청장은 청소년출입제한구역내에 청소년의 출입을 억제하기 위하여 유관단체 등과 협조체계를 구축하는 등 최대한의 행정력을 지원하여야 한다.

②구청장은 청소년출입제한구역내의 청소년유해환경업소가 완전 정화될 때까지 관할 유관기관과 긴밀한 협조를 통하여 구역내의 모든 청소년유해환경업소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지도·계몽 및 단속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별표 1 >

청소년출입제한구역 지정범위

동 명	위 치	면 적	거 리 명
영등포2동	영등포4가 435번지 일대	B = 6M L = 200M	신세계백화점 뒷골목
영등포2동	영등포4가 418, 427번지 일대	B = 3M L = 40M	영등포역 옆골목
신길3동	신길동 261번지 일대	B = 7M L = 150M	신길동 텍사스골목

서울특별시영등포구자동차운수사업에관한과징금징수조례폐지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999. 3. 10.
사회건설위원회

1. 심사경과

-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1999년 2월 26일 영등포구청장 제출
- 나. 회 부 일 자 : 1999년 3월 2일 회부
- 다. 상 정 일 자 : 1999년 3월 9일 제62회(임시회)제6차 사회건설위원회 상정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 교통지도과장 김찬수)

- 가. 폐지이유
 - 서울특별시영등포구자동차운수사업에관한과징금징수조례는 자동차운수사업법에서 여객운수사업자의 자동차운수사업법령 위반시 그 처분기준 및 과징금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위임함에 따라 '89. 2. 1 동 조례를 제정 현재까지 시행하여 오고 있으나,
 - '98. 8. 20. 자동차운수사업법령의 폐지와 아울러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령의 제정시 여객운수사업자의 법령 위반사항 처리기준 및 과징금 부과·징수 기준을 시행령 및 규칙에 직접 규정함으로써 우리구 조례와 중복되어 폐지하고자 함.

- 나. 주요골자
 - 조례폐지

3.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 유제한)

본 조례안은 '89. 2월부터 자동차운수사업법 제31조의2, 제3항 단서규정에 의하여 자치단체장에게 위임된 사무로서 현재까지 자동차운수사업법 규정에 의거하여 과징금 징수 업무를 처리하여 왔으나 '98. 8. 20일 자동차운수사업법 및 동법 시행령이 폐지되고 여객자